

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06. 7. 24
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
재무건설위원회

1. 審査經過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6년 7월 13일 종로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06년 7월 14일 원안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16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
제1차 재무건설위원회(2007. 7. 24) 상정·의결

2. 提案說明의 要旨 (제안설명자 : 재정경제국장 김 연 수)

가. 개정이유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·공포됨에 따라 우리구 공유재산과 물품 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「서울특별시종로구공유재산관리조례」와 「서울특별시종로구물품관리조례」를 각각 폐지하고, 하나의 조례로 통합·제정하여 법령의 위임사항 및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구 공유재산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은 5급이상 직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함 (안 제4조).
- 구청장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·처분하도록 함 (안 제11조).

-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되,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 또는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함 (안 제16조).
- 토지의 지하·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대부료 산정 근거는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을 준용하도록 함 (안 제27조).
- 공유재산의 대부료·사용료가 전년도 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하여 증가분에 대한 감액조정을 하는 때에는 당해시설이 주거시설인 경우 감액율을 100분의 45로 함 (안 제32조).
- 공유재산 대부료의 납부기간은 그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고,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전으로 함 (안 제33조).
-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여 구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30제곱미터 이하 토지는 그 건물 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, 그 건물발생시기도 종전 1981. 4. 30이전에서 1989. 1. 24이전으로 확대 조정함 (안 제38조제1호및제4호).
- 물품의 품종 상태구분 기준에서 비품 관리대상 하한선을 내구년수 1년이상, 취득단가는 종전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하향조정함 (안 제60조 별표 2).
- 영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징수하되, 전년도 변상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해 3월에 부과·징수함 (안 제69조).
-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령이 제정됨에 따라 그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현행 「서울특별시종로구공유재산관리조례」 및 「서울특별시종로구물품관리조례」를 각각 폐지하고, 이를 통합·운영함 (부칙 안 제2조).

3.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

(보고자 : 전문위원 김 충 식) — 별첨 검토보고서 참조

4. 質疑 및 答辯 要旨 (생 략)

5. 討 論 要 旨

○ 박 종 식 위원의 수정안 동의

6. 修 正 案 의 要 旨

○ 수정이유

- 안 제4조중 "공유재산의 취득 · 처분은 결과적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, 주민의 대표로서 구의원이 구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적극 참여한다는 측면을 비추어 보면, 구성 위원수 11인을 15인으로 상향조정하고, 위원중 구의원 3인을 추가로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
- 별표 1의 2. 구의회 청사 의원실란 중 의원연구실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현재 3층에 의원연구실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(28.05㎡/의원 1인당)에 맞추어 설계면적기준을 추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.

○ 수정안 본문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함.

제4조중 "11인"을 "15인"으로 하고, 동조제2항중 "위원은 5급 이상의 구 소속 직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"를 "위원은 구의회 의원 3인과 5급 이상의 구 소속 직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"로 한다.

별표1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함.

별표 1의 2. 구의회 청사 위원실 중 위원장실 다음에 의원연구실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구 분		실 별	설 계 기 준	비 고
의원실	a	의원연구실	28.05㎡/의원 1인당	308.55㎡/11인

○ 수정안 대비표

원 안	수 정 안
제4조(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) ①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구 공유재산심의회(이하 “심의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	제4조(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15인 ----- -----
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재정경제국장이 되며, 위원은 5급 이상의 구 소속 직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.	②----- ----- 위원은 구의회 의원 3인과 5급 이상의 구 소속 직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.
③(생략)	③(원안과 같음)
④(생략)	④(원안과 같음)

별표 1의 2.

원 안	수 정 안			
(신설)	구 분	실 별	설계기준	비 고
	의원실	a 의원연구실	28.05㎡/ 의원 1인당	308.55㎡/ 11인

7. 審 査 結 果 : 수정가결

(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수정가결함)

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중 “11인”을 “15인”으로 하고, 동조제2항중 “위원은 5급 이상의 구 소속 직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”를 “위원은 구의회 의원 3인과 5급 이상의 구 소속 직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”로 한다.

별표1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별표 1의 2. 구의회 청사 위원실 중 위원장실 다음에 의원연구실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구 분		실 별	설 제 기 준	비 고
의원실	a	의원연구실	28.05㎡/의원 1인당	308.55㎡/11인